

영 등 포 구 의 회  
제11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2005. 3. 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5. 2. 17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개정(제안) 이유

- 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여성발전기본법의 법취지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 활동의 활성화 등 영등포구의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구청장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함(안 제7조)
- 구청장은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 등 관련사업을 추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9조)
- 구청장은 성차별 개선을 위하여 창구운영, 교육 등 예방조치와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0조)
- 구청장은 모성보호와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2, 13조)
-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음(안 제15조)
- 구청장은 여성정책 의견수렴창구를 운영하고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7조)
-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 (안 제27조)
-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함(안 제27조)
- 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등의 지원에 사용함(안 제28조)
-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함(안 제29조)

-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둠(안 제35조)
-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사용 내용을 정리함(안 제36조)
-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안 제37조)

## □ 관련 법 규

- 여성발전기본법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

## □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서울특별시(2004.6.21), 동작구(2004.8.5)

##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를 보면
  - ° 2003. 1. 1 개정,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법취지에 맞게 여성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개정하려는 법정사항입니다.

○ 본 조례 구성을 보면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 선언적 의미에 그쳐왔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의지를 조례화 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촉진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원을 통한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하는데 조례개정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으며
-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18조에 여성정책 수립 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제30조에서는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고는 하나 운용면에서 2개의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 제27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의 타당성은 충분 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 향후 기금 조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 3. 3

보 고 자 : 이 남 식